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전담인력 3차 채용 재공고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재공고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6(공고의 결과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2023년 11월 27일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1.모집인원 및 분야

고용형태	직위	모집인원	자격기준	계약기간
기간제 (계약직)	주임	1명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시설, 사업 경력 3년 이상인 자	근로계약 체결일 ~ 2024.12.31.

※ 자격기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시설, 사업을 기준으로 자격 인정

2.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근무지	직위	보수형태	보수 수준
제주 사회 서비스원	주임	월급제	- 기본급(2,265,300/월) - 명절수당(기본급 120%, 설, 추석 2회 분할 지급) - 가족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 퇴직급여 제공(1년 이상 근무시) - 4대보험 가입
--	--	--	--

※ 24년 기본급의 경우 23년 기본급에서 행정안전부 급여 인상 물가상승분 반영 적용

3. 직무내용

구 분	주요 업무
주임	■ 제공기관 및 수행인력 교육, 훈련 ■ 제공기관과의 상설회의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간담회 등) ■ 사업 홍보, 우수사례 발굴 홍보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서비스 의뢰, 결과 취합, 사업비 정산 등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수행인력 지원 - 민원 처리 등 ■ 기타 사업 수행 관련 업무 등

4. 응시자격 조건(공고일 기준)

가. 공통요건(공고일 기준)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성별 제한 :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 인사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공공기관 채용이 취소된 적이 없는 자
-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구 분	결격사유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참고1]

- 상기 조항에 위배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직급별 자격기준(공고일 기준)

- 다음의 각 직급별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직 급	자격기준*
주임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 경력 3년 이상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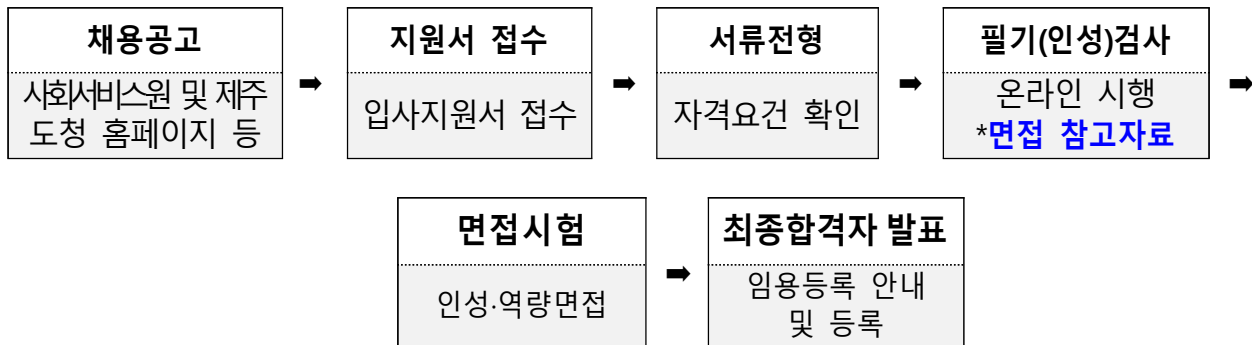
※ 자격기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시설, 사업을 기준으로 자격 인정

다. 가점기준(우대사항)

구 분	대 상	우대 요건	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면접 각 항목 40% 이상 득점 시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장 이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면접만점 5%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중복 적용 불가) ○ 사회적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①→③ 순으로 우대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 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시험단계 및 채용절차

-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 시험단계 : 서류전형 → 필기(인성검사) → 면접시험
- 채용절차



※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6. 시험 세부내용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가. 채용공고

- 공고기간 : '23. 11. 27.(월) ~ 12. 5.(화)
- 공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및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

나.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3. 11. 27.(월) ~ 12. 5.(화), 15: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jpcare@jeju.pas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돌봄서비스지원팀
- 응시직위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전담인력(주임)
 - 제출된 서류는 지원 자격의 적격 여부 및 서류심사를 위해 사용
 - 채용 형식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이용 동의서,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2. 서류전형

가. 일자/장소 및 시험위원

- 서류전형 : ‘23. 12. 6.(수)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시험위원 : 2명(내부위원)

나. 심사방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응시 자격의 적격여부 결정
 - ※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다. 합격자 결정

평가항목	합격자 결정 기준	비 고
· 응시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 채용분야 응시자격이 “적격” 인자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인성검사)·면접시험 대상자 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12. 7.(목)
- 통지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3. 필기(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가.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일자 및 장소

- 일 자 : ‘23. 12. 11.(월)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1층

나. 인성검사 대상 및 출제방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출제방법 : 온라인 인성검사(인성검사 종합결과, 응답신뢰도, 조직적합도 항목)
 - 응시자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 또는 노트북 활용 온라인 검사 진행
- 합격자결정 : 응시자 전원 면접시험 기회 부여,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다. 면접전형 시험위원 및 심사방법

- 면접위원 : 3명(내 · 외부위원)
- 심사방법

면접평정요소					배점
①공적책무성 등	②인성 및 직업관	③이해력 및 지식수준	④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⑤창의성 및 전문성	
20	20	20	20	20	100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7. 채용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3. 11. 27.(월) ~ 12. 5.(화)	제주사회서비스원, 도청 홈페이지 등 공고
지원서접수	‘23. 11. 27.(월) ~ 12. 5.(화) 15:00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3. 12. 7.(목)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안내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23. 12. 11.(월)	
최종합격자발표	‘23. 12. 13.(수)	
임용등록기간	‘23. 12. 13.(수) ~ 12. 18.(월)	
임용일	‘23. 12. 18.(월) 예정	

※ 상기일정은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단계별 일정 공고 시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임

※ 임용서류 취합 일정에 따라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응시자 공통	응시원서	[서식1] 필수제출
	자기소개서	[서식2] 필수제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서식3] 필수제출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필수제출
	주민등록등본	필수제출
	재직/경력증명서	필수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필수제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사회적취업 취약계층 증명서	해당자(가산점 확인)
최종 합격자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2. 인사기록카드 3. 기본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일반채용 신체검사서 6.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3*4cm) 7.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기타 서류는 별도 안내	

※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실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사 결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음

9.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3. 11. 27.(월) ~ 12. 5.(화), 15: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jpcare@jeju.pass.or.kr)
(※ 방문접수는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돌봄서비스지원팀
- 문의전화 : 070-8805-4994(돌봄서비스지원팀)

10.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지

가.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구분	면접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기준
공통 사항	①공적책무성, 사업의 목적성 부합여부 ②이해력 및 지식수준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인성 및 직업관 ⑤창의성 및 전문성	·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사회적취업취약계층(①→③) - 4순위: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 (①→②→③→④→⑤)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나. 최종 합격자 통지

- 합격자 발표 : '23. 12. 13.(수)
- 통지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채용 임용예정일 : '23. 12. 18.(월) 예정

-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과 고용계약 체결

※ 임용서류 취합 일정에 따라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11.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안내

가.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예비합격자는 비공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9조(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① 원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 ②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나.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순번(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다.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접수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방법 :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돌봄서비스지원팀으로 제출
-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답변 처리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라. 채용서류 반환

- 운영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돌봄서비스지원팀으로 제출
- 반환방법 : 입사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비용은 기관부담)

12. 기타사항

-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사회서비스원·제주도청 홈페이지등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나.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채용 일정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됩니다.
- 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바.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가점 확인 및 자격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사.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최종 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자. 임용 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차.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카.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 지원자격 요건 심사 및 급여 반영을 위한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서류 적부심사 시 결정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합니다.
- 파.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돌봄서비스지원팀 (070-8805-49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는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